

현행	개정안
제54조(공용,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) ①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<u>비과세</u>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<u>비과세</u>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제54조(공용,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) ① 법 제238조의2, 법 제279조,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 <u>비과세</u> 또는 감면 <u>비과세</u> 또는 감면 ② (현행과 같음)
제61조(납기) 재산환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.	(삭제)
제63조(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)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<u>비과세</u> 또는 <u>감면</u> 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납기개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략)	제63조(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) <u>비과세</u> 1. ~ 6. (현행과 같음)

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5. 3. 23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5. 3. 23

라. 상정일자 : 1995. 3. 24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시정소식지발행조례상 편집주간 및 보조원의 임용, 보수, 복무, 상벌, 신분, 권익보장을 규정할 수 있는 규칙의 제정근거가 없어 이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“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”를 신설(안 제9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?	○ 편집주간 및 보조원의 임용, 보수, 복무, 상벌, 신분, 권익보장 등입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나. 반대토론

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- 없 음

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375
의결	95. 3. 28
년월일	(제36회)

제출년월일 : 1995. 3. 23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시정소식지발행조례상 편집주간 및 보조원의 임용, 보수, 복무, 상벌, 신분, 권익보장을 규정할 수 있는 규칙의 제정근거가 없어 이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

□ 주요골자

- “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”를 신설(안 제9조)

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(신설)	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